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고신대학교

1. 모집 학과(부) 및 모집인원

가. 모집학과(부)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재외국민 (2%이내)	비고
신학과		40		
국제문화선교학과		22		
태권도선교학과		30		
의료경영학부	의료경영전공	55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사회복지학과		50		
아동복지학과 교직		40		
디지털영상마케팅학과		30		
영어과		25		
중국어중국학과		2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25		
음악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타악	40		
	실용음악			
작업치료학과		50		
언어치료학과		35		
재활상담학과		30		
보건환경학부	환경보건전공 교직	40		
	뷰티케어전공			
의생명과학과		25		
식품영양학과 교직		30		
융합디자인학과		25		
소 계		861 (정원내 총합)	17 (모집가능)	

※ 모집단위는 우리 대학의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모집인원

- (1)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 신입생 입학정원의 2%내에서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가능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교 전 학교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정원의 제한 없이 우리 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

1) 교직 : 교직 이수 가능 학과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직접/우편	1차 2022.7.4(월) ~ 7.8(금) (10:00 ~ 16:00)		입학관리팀	
		2차 2022.9.13(화) ~ 9.17(토) (09:00 ~ 17:00)			
		3차 2022.12.29(목) ~ 2023.01.02(월) (10:00~16:00)			
서류심사 결과발표		1차 2022. 7. 28(목) 14:00		입학안내 홈페이지(개별통보 하지 않음) http://dream.kosin.ac.kr/	
		2차 2022. 9. 30(금) 14:00			
		3차 2023. 1. 5(목) 14:00			
면접평가		1차 2022. 8. 3(수)		입학관리팀	
		2차 2022. 10. 8(토)			
		3차	가군		2023. 1. 6(금)
			나군		2023. 1.13(금)
실기평가	예체능	1차 2022. 8. 3(수)			
		2차 2022. 10. 8(토)			
		3차 2023. 1.26(목)			
합격자 발표		1차 2022. 8. 12(금) 14:00		입학안내 홈페이지(개별통보 하지 않음) http://dream.kosin.ac.kr/	
		2차 2022.11. 9(수) 14:00			
		3차 2023. 2. 6(월) 14:00			
합격자 등록		1차 · 2차 2022.12.16(금) ~ 12.19(월)		1. 합격자는 인터넷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기간 내 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납부기간 내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 격이 취소됨 3. 잔여등록금 납부안내 : 2023. 2. 7(화) ~ 2. 9(목)	
		3차 2023. 2. 7(화) ~ 2. 9(목)		1. 합격자는 인터넷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기간 내 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모든 입학은 2023년 3월입니다.

3.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가. 지원자격

자격기준	내 용	
공통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우리 대학 교육이념과 신앙교육에 동의하는 자	
추가자격	신학과	세례교인
	국제문화선교학과	학습교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중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예체능 학과는 3급 이상)**

정원 제한	구분	지 원 자 격
입학 정원 2%		국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제한 없음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국외에서 국내 초중고에 해당하는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12년 미만 학년제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총 수학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북한이탈주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우리나라의 초중고에 해당하는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외국인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복수국적자와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한다. ※ 외국소재 고교 및 국내 소재 고교 불문.

나. 지원자격 심사기준

(1) 외국학교 소재지 및 인정기준

- ①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뜻한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으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외 소재 학교 모두 인정한다.
- ② 부모 근무국의 학교만 인정하나,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의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③ 해당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하며,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2) 자격인정 기준시점

- ① 학생은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해당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한다.
- ② 부모의 외국근무기간, 영주기간, 유학·연수기간, 외국영업기간 및 해외체류기간의 산정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

일까지로 한다.

(3) 재학연한 인정기준

- ①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외국의 1~6학년 과정은 초등학교, 7~9학년 과정은 중학교, 10~12학년 과정은 고등학교로 인정한다.
 - ②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한다.(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③ 외국학교로 신·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④ 학제차이로 인하여 국내수학기간과 외국수학기간이 중복된 경우 혹은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는 6개월까지 자격취득기간으로 인정한다.
 - ⑤ 해외파견근무자는 외국근무기간, 교포는 영주기간, 외국유학·연수자는 외국유학·연수기간, 현지법인·자영업자는 외국근무·영업기간 내에서 자녀들의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인정한다.
- (4) 교포는 지원 당시 부모 및 학생의 주민등록은 이민말소가 되어야 한다.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는 교포의 자격을 인정한다.(대사관 및 영사관의 확인 필요)
- (5) 해외파견근무자, 외국유학·연수자, 현지법인근무자는 경력증명서에 해외근무 및 유학·연수기간 중 휴직으로 처리된 기간은 지원자격 취득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입학허용기간과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다.
- (7)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치우함을 규정하였으므로 외국인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국적법 제11조의2)

다. 지원자격 관련 용어 정의

정의	내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라.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인정여부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4. 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가. 전형방법

(1) 재외국민, 외국인 :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 또는 실기에 의하여 선발한다.

① 실기고사 과목

구분	실기과목		비고
음악과	피아노	자유곡 1곡	-
	성악		-
	실용음악(보컬, 악기, 작곡)		
	관현악, 타악		
태권도 선교학과	겨루기	·겨루기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발차기 ·스텝을 이용한 기술의 연결 변화와 동작의 다양성 ·전술 응용 차기 ·미트 겨루기	하나만 택일 80점
	폼새	·고려 - 지정 ·금강, 태백 중 1	
	시범	·주특기 발차기 2가지 시연 ·고려 폼새	
	기본발차기	· 돌려차기 좌/우 2회 · 옆차기 좌/우 2회 · 뒤차기 좌/우 2회 · 뒤후려차기 좌/우 2회	20점

② 면접 및 실기 고사에 결시한 자, 성적이 5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단 면접 당일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수학중인 수험생의 경우에 한해 전화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2) 순수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 및 실기에 의하여 선발한다.

① 실기고사 과목 : 재외국민과 동일

② 순수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처리할 수 있다.

③ 면접은 적부판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된다.

※ 단 면접 당일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수학중인 수험생의 경우에 한해 전화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전형절차

전체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지원자격) 심사로 200%를 선발하고, 2단계 전형(면접 및 실기고사)으로 100%를 선발한다.

다. 기타 사항

(1) 동점자는 면접 및 실기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2)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전형 성적이 현저하게 낮거나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5. 제출 서류

구 분	교포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기타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		비 고
						선교사	외국유학 연수자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재외국민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국적 취득자	
입학원서	○	○	○	○	○	○	○	○	○	○	○	○	○	○	우리 대학 소정양식
자기소개서										○	○	○	○	○	우리 대학 소정양식
학업동서	○	○	○	○	○	○	○	○	○	○	○	○	○	○	우리 대학 소정양식
재정보증서										○	○		○	○	우리 대학 소정양식(학생 또는 부모)
재정보증자의 재직증명서										○	○		○	○	
은행예금잔고증명서											○		○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 이상 (학생 또는 부모)
비자신청자료										○	○		○	○	우리 대학 소정양식
시증발급신청서										○	○		○	○	우리 대학 소정양식
*고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	○	○	○	○	○	○	○	○	○	○		○	○	아프스티유 또는 영시확인 필요
*고교 성적증명서	○	○	○	○	○	○	○	○	○	○	○		○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	○	○	○	○	○	○	○	○	○	○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	○	○	○	○	○				국내 초·중학교의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 를 제출
학력증명서												○			관할지방자치 시도 교육감 발행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경우 발행함)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	○	○	○				제3국 수학허가지만 해당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외국국적취득자·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 적의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해당국 영사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	○	○	○	○	○	○				○		외국국적취득자·국적상실확인증명서(주민 등록말소등본 또는 제적등본) 영국·교포·주미등록말소등본 또는 재외국 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영주권사본	○ 부모 학생														
외국인증명서 및 부모·학생 관계 증명서											○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외국정부 발행 순수외국인(중국)·호구부, 호구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국내체류외국인만 해당)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		○	○	여권사본은 본인, 신분증사본은 본인 및 부모 외국국적취득자·시민권 사본 가능
*해외지사(법인)설치 관계서류			○												
*현지법인설치 관계서류											○				외국정부 발행
*영업허가 증명서류 및 세금납부 증명서류														○	외국정부 발행
선교사 파송 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 (외국근무 경력기간 명시)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	○	○						본사 발행
정부초청 추천에 관한 증명서류					○										
유학 연수사실증명서															외국대학 연수기관 발행
사진(3cm*4cm) 3매										○	○		○	○	비자신청용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사·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증명서											○		○		TOPIK 4급이상(예체능 계열은 3급이상)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1)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한 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 (2) 제출서류 중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혹은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최종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공증받은 서류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포스티유란?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년 7월 14일 발효)
 - 아포스티유 협약 소개
 - 아포스티유 관련 Q&A
 - 아포스티유 신청서, 영사확인 신청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은 해당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를 부착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 을 받거나 주한 해당국 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9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조 하면 된다.(미가입국: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경유증명 해당국) 단, 중국국적 소직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한다.
 -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홈페이지 공지문
<http://www.eoe.or.kr/publish/portal24/tab1140/info9534.htm>
 - 중국교육부 학력인증센터 : www.chsi.com.cn ☎ 86-10-82338424
 - 중국교육부 학위인증센터 : www.cdgdc.edu.cn ☎ 86-10-82379480
 - 서울공자아카데미 : <http://www.cis.or.kr/main.htm/>

- (3)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입학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 성적우수 등으로 월반, 조기졸업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해당 학교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외국인증명서 및 부모·학생 관계증명서

- 순수외국인 중에서 중국 국적의 경우 부모·학생의 호구부 사본(만일 호구부에 부모·학생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안국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과 부모·학생의 호적증명서를 제출한다.
- 외국국적취득자 중에서 중국국적의 경우에는 부모·학생의 호구부 사본(만일 호구부에 부모·학생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안국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과 부모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외지사(법인)설치 관계서류

- ①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해외지사 및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 : 직접투자승인서(해외지사설치인증서)
- ② 외국환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허가한 현지법인·금융기관 : 해외법인설치확인서

※ 현지법인설치 관계서류 : 한국어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한다.

※ 영업허가 증명서류 및 세금납부 증명서류

- ① 세금납부 증명서류는 지원자격취득기간(학생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이상 중·고교과정을 계속 재학한 기간) 동안의 세금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② 영업허가 증명서류 및 세금납부 증명서류는 모두 한국어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한다.

6. 전형료 : 60,000원 (서류심사비 30,000원, 전형료 30,000원)

7. 지원서 작성 및 접수

- 가. 우리 대학에서 정한 모든 제출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제출서류의 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번역오류,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원서접수 불가 및 취소, 시험응시불허, 불합격, 합격취소 등)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조회동의서는 반드시 작성 방법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한 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 라. 지원서접수 때는 반드시 소정의 전형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마. 우편접수는 전형료를 함께 동봉하여 모든 제출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 도착한 것에 한하여 접수한다.
 - 주소 : 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 입학관리팀
 - 봉투에는 '재외국민(외국인) 신입학 원서 재증'이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바. 접수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사. 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8.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반드시 모집요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원서접수 및 전형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우리 대학이 정한 소정의 전형절차에 따라야 한다. 지원자의 착오 및 전형절차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원서접수취소, 시험응시불허, 불합격 및 합격취소 등)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수험생은 면접 및 실기고사 시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라. 합격자는 타 대학교에 이중등록할 수 없다.
(타 대학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해야 한다).
- 마.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바. 입학허가자에 대해서는 전적학교의 학력조회와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게 된다. 만일 무자격자로 드러나거나 지원서의 허위기재, 전형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지원서의 허위기재, 전형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사. 전형에 관한 모든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아. 전형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재외국민은 입학관리팀(전화: 051-990-2141)으로, 순수외국인은 국제교류팀(전화: 051-990-2239)으로 문의

2023학년도 고신대학교 (재외국민, 외국국적취득 외국인용)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지원서

수험번호	※	
------	---	--

1. 지원자 관련사항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사진 (3cm × 4cm)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지원사항	학과(부)						
연락처	E-mail						
	전화			이동전화			
주소							

2. 지원자격(해당란의 □에 √표시)

- (1)교포자녀□ (2)공무원□ (3)상사직원□ (4)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5)유치과학자·교수요원□
 (6)선교사□ (7)유학·연수자□ (8)현지법인□ (9)자영업자□ (10)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1)북한이탈주민□ (12)외국국적취득 외국인□

3. 재외국민 기재사항

(1) 교포자녀, 외국국적취득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근무(재학)국	*외국근무(재학)기간	*외국체류기간
지원자				~	년 개월
부				~	년 개월
모				~	년 개월

(2) 교포자녀

구분	성명	영주국	영주권번호	영주권취득일	*외국체류기간
지원자					년 개월
부					년 개월
모					년 개월

- * ① 외국근무기간은 재직(경력)증명서(유학·연수자는 재학사실증명서, 자영업자는 영업사실증명서)에 의거하여 기입한다.
 ② 외국체류기간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거하여 기입한다.

4. 외국국적취득 외국인 기재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국적	시민권번호	시민권취득일
지원자					
부					
모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고신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료 수납인
---	------------

2023학년도 고신대학교 (순수외국인용)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지원서

수험번호	※	
------	---	--

1. 지원자 관련사항

성명	한글	영문(ENGLISH)		중문(中文)	사진 (3cm × 4cm)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국적	거주국				
지원사항	학과(부)				
연락처	E-mail	집전화			
	이동전화	한국내 연락가능 전화			
	외국주소				
	한국주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급			

2. 학력사항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재학했던 모든 학교들을 빠짐없이 기입)

학교명	재학 기간	학교 주소	전화, 팩스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Tel Fax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Tel Fax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Tel Fax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Tel Fax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Tel Fax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Tel Fax
총 재학기간 : 년 개월			

3. 가족사항

구분	성명(中文)	성명(ENGLISH)	생년월일	국적	직업
부					
모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고신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료 수납인
---	------------

자기소개서

성명		지원학과(부)	
----	--	---------	--

※ 양식은 문항별로 기술하는 분량에 따라 본인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1. 가족사항 및 성장과정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2. 교육과정(초,중,고 학교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3. 우리 대학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4. 자기 자신의 장점(학업, 성격, 특기 등) 및 장래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학업동의서

지원학과 :

성 명 :

동의사항	나는 고신대학교 지원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고신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신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성실하게 학업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	--	------

* 신학과, 국제문화선교학과만 아래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교회명	
교역자명	
신급	(세례/입교, 학습, 유아세례, 6개월 출석, 기독교 고교 졸업)

지원자 : (서명)

고신대학교 총장 귀하

KOSIN UNIVERSITY
FINANCIAL CERTIFICATION FOR ADMISSION
(재 정보 증 서)

1. Name in Full (지원자 성명)	Korean Name _____ (한글) Family(Last/Sur) name First name Middle name(in full)		
	English Name _____ (영문명) Family(Last/Sur) name First name Middle name(in full)		
	Marital Status <input type="checkbox"/> Single <input type="checkbox"/> Married (결혼유무) (미혼) (기혼)		
	Gender <input type="checkbox"/> Male <input type="checkbox"/> Female (성별) (남) (여)		
2. Nationality(국적)		3. Date of Birth(MM/DD/YY) (생년월일)	
4. Place of Birth(출생지)			
5. Permanent Address(본적)			
6. Mailing Address(현주소)			
7. Telephone Number(in Korea) () Telephone Number(in your own country) ()-()-() Country code Area code Phone Number		8. Present Occupation(직업) _____ _____	

You and your sponsor must provide for your educational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your entire educational program at KOSIN University. Also, educational and/or living expenses must be provided for your husband or wife and/or children who will be accompanying you. Please attach a bank certification indicating that either you or your sponsor have at least **US \$18,000** for at least a period of one month in your or your sponsor's account. (고신대학교에서 체류하는 동안 소요되는 학비·생활비를 학생 본인이나 재정보증인이 지불해야 하며, 이 체재비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의 체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 재정보증서와 체재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최소 1개월 이상 예치된 미화 **18,000\$** 이상의 금액)
- ◆ 내국인의 신원보증서(공증을 요함)

If you are not paying for your own educational and living expenses, please indicate the person or organization who is paying for you: (본인이 고신대학교에서의 체재비를 충당할 수 없다면, 재정보증을 해줄 사람이나 기관을 적으시오)

Name _____ (재정보증인)
(성명)
Relationship to Applicant _____ Occupation _____
(지원자와의 관계) (직업)
Address _____
(주소)
Tel _____ (반드시 기입할 것)

"I guarantee that the amount of US \$ _____ will be available for the above named applicant and/or husband or wife and/or children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is program." (본인은 상기 고신대학교 지원자 및 가족들이 고신대학교에 체류하는 동안 소요되는 체재비 _____ 를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Signature _____ Date: _____
(서명 또는 인) (날짜)

비자 신청 자료

항 목	내 용	비 고	항 목	내 용	비 고	
성 명			부모성명	부	한글	
					영문	
				모	한글	
					영문	
성 별			학력	부		
				모		
생년월일			직장명	부		
				모		
민족			직위	부		
				모		
출신 지역			전화번호	부		
				모		
최종 학교명			월소득	부		
				모		
소재지 및 전화			생년월일 (부모)	부		
				모		
재학기간			후원			
졸업증서 번호						